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23 선고 2020가단56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목포시 D 대 96.4㎡ 및 그 지상 세멘 블록조 시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33.05㎡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699,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69,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 C(이하, 소외인)과 사이에 C의 기업은행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인이 2020. 7. 22.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11. 4. 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소외인은 2020. 6. 15.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20. 6. 15.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소외인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26,600,000원 상당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E은행에 대한 9,496,000원, F에 대한 11,004,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14,500,000원 합계 3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9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취소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은 2017. 11. 2.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인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2020. 6. 15.부터 1개월여 만인 2020. 7. 22.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2020. 11. 4.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

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인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 임의경매가 개시되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타인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020. 11. 5. 기준 8,460,563원인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22,531,561원이 배당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21. 1. 19. 기준 64,726,9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그 범위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가액 64,726,92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2,531,561원을 공제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42,195,359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8,460,563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42,195,359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669,143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2,669,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669,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